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1 4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6카기44 소송허가신청

대표당사자 이준식

부산 남구 동명로118번길 115(용호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송성현, 임진성

피 고 삼일회계법인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한강로2가)

대표이사 안경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임재연, 최동렬, 문일봉, 박영윤, 김선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석, 김혜균

주 문

이 법원 2016가합30418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불허가한다.

신 청 취 지

이 법원 2016가합30418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회계감사업무,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정리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1. 3. 31. 설립된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서 정한 회계법인이다.

2) 동양네트웍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동양시스템즈 주식회사, 이하 상호변경,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절차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동양네트웍스'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 판매, 임대, 정보처리·수탁관리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1. 3. 30. 설립된 회사이고, 2000. 12. 26. 코스닥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한 후 2010. 11. 2. 유가증권시장으로 주식을 이전 상장한 주권상장법인이다.

3) 주식회사 동양레저(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절차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동양레저'라 한다)는 관광휴양업, 관광숙박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89. 10. 5. 설립된 회사이다.

4) 주식회사 동양인터내셔널(이하 회생절차개시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동양인터내셔널'이라 한다)은 팩토링 금융, 경영컨설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5. 3. 28. 설립된 회사이다.

5) 2012년 당시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및 주식회사 동양(이하 '(주) 동양'이라 한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으로서 기업집단 동양(이하 '동양그룹'이라 한다, 기업집단 대표회사 (주)동양)에 속하였고,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은 상호 특수관계자로 공시하였다.

나. 동양네트웍스의 2012년 재무제표에 대한 피고의 감사보고서 등

1) 동양그룹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해지자 2012. 12.경 일정한 사업 부문을 정리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부터 동양네트웍스를 통하여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 동양네트웍스는 2012. 12. 2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이하 'DART'라 한다)에 '취득물건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일원 웨스트파인 골프장부지 및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취득가액 79,330,720,000원, 거래상대 동양레저'로 된 '유형 자산 취득결정'을, 2012. 12. 27. 같은 내용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및 '주요사항보고서(중요한 자산양수도 결정)'를 각각 공시하였다(이하 '공시'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DART를 통해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동양네트웍스는 2012년 말경까지 동양레저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계약금 및 제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4) 동양레저도 2012. 12. 31. 이 사건 골프장 거래를 공시하였다.

5) 동양네트웍스의 2012년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이하 'CP'라 한다)에 관한 기준 거래 총금액은 약 1,260억 원이었고, 총 54회의 CP 매입·상환이 있었으며, 평균 잔액은 약 162억 원 수준이었다.

6) 동양네트웍스의 2012. 12. 31. 기준 CP 매입거래 잔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0억 원이었고, 각 만기일에 모두 상환되었다.

회사명	금액(단위: 백만원)	발행일	만기일
동양레저	2,000	2012. 12. 27.	2013. 1. 15.
	2,000	2012. 12. 28.	2013. 1. 18.
	2,000	2012. 12. 31.	2013. 1. 21.
	합계 6,000	.	
동양인터내셔널	2,000	2012. 12. 27.	2013. 1. 14.
	2,000	2012. 12. 28.	2013. 1. 17.
	2,000	2012. 12. 31.	2013. 1. 16.
	합계 6,000	.	

7) 피고는 외부감사인으로 2013. 3. 21. 동양네트웍스에 제22기(2012. 1. 1. ~ 2012. 12. 31.) 재무제표(이하 '이 사건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8) 동양네트웍스는 2013. 3.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고, 2013. 4. 1. 공시한 2012년 사업보고서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가 동양네트웍스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입니다.

회사는 2013년 1월 10일에 (주)동양으로부터 동양시멘트(주)의 주식 5,640,000주(4.41%)를 15,341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회사는 2013년 1월 17일에 Transcosmos Inc으로부터 관계회사인 동양온라인(주)의 주식 862,069주(43.6%)를 6,500백만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추가 취득의 결과로 누적지분을 85.15%가 되어 종속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2013년 3월 13일에 (주)동양으로부터 동양티에스 주식회사의 주식 1,230,034주(100%)를 7,516백만원에 취득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13년 1월 2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계열회사인 티와이머니대부(주)에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유상증자를 완료하여 신주상장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 배정대상자인 티와이머니대부(주)가 지분을 23.07%로 최대주주가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1. 특수관계자 거래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주요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관계

특수관계 종류	회사명
기타 특수관계자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 (생략) ...

나. 당기와 전기 중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구 분	당기		전기	
	매출 등 수익	매입 등 비용	매출 등 수익	매입 등 비용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85,101,536	2,494,526	2,476,522	4,133
종속기업	298,076	388,574	-	-
관계기업	738,737	136,114	321,709	-
기타특수관계자	112,378,022	1,069,533	81,798,698	1,529,793
합 계	198,516,371	4,088,747	84,596,929	1,533,926

다.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당기말	채권 등	채무 등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39,917,459	2,504,812
종속기업	11,355,983	294,971
관계기업	169,346	2,752
기타특수관계자	32,777,063	175,852,185
합 계	84,219,851	178,654,720

(*) 당기말 현재 기타특수관계자의 채무에는 회사가 차입금으로 계상한 매도유가증권(주)오리온 주식 159,000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말	채권 등	채무 등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	422,501	584
종속기업	-	-
관계기업	-	-
기타특수관계자	9,117,293	1,478,367
합 계	9,539,794	1,478,951

라.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단

위: 천원).

내역	당기말	전기말
주임종대여금	74,746	110,944
관계사대여금	11,083,000	-
대손충당금(*)	(6,998,500)	-
합계	4,159,246	110,944

(*) 당기 중 회사는 관계사 대여금에 대하여 760,000천원의 손상을 인식하였습니다.

9) 동양네트웍스는 2013. 5. 2. 이 사건 골프장 거래(자산양수도)를 2013. 4. 30.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종료보고서'를 공시하였다.

다.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의 2012년 재무제표 등

1) 한편 동양레저는 2013. 4. 3. 다음과 같은 주식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외부감사인 삼정회계법인).

(*2) 상기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동양네트웍스와 당기 중 유형자산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거래와 관련하여 수령한 92,000,000천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채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24(당기)

(단위 : 천원)							
특수관계구분	특수관계자명	채권		채무			
		매출채권등	보증금	단기차입금(+)	미지급금등	선수금	보증금
종속기업	(주)동양	5,496	-	19,600,000	6,130	-	9,200,000
	동양인터내셔널(주)	-	-	38,800,000	-	-	-
	동양시멘트(주) 등	12,144	-	25,300,000	11,473	-	9,940,000
관계기업	동양증권(주)	539,838	40,767	-	7,577	-	18,570,000
기타	동양생명보험(주)	145,762	10,300,000	-	2,210	-	13,780,000
	동양네트웍스(주)	1,298,981	-	6,000,000	477,494	92,000,000	3,380,000
	동양파이낸셜대부(주) 등	21,401	-	3,500,000	17,834	-	7,980,000
합계		2,023,622	10,340,767	93,200,000	522,718	92,000,000	62,850,000

(*) 단기차입금은 아이엠투자증권(주)(구, 솔로몬투자증권(주)) 등을 통해 중개된 기업어음입니다.

2) 동양인터내셔널은 2013. 4. 1. 다음과 같은 주석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19.1 기중 특수관계자간 거래내역과 기말 현재 특수관계자간에 대한 채권 및 채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자	구분	매출	매입	채권 등	채무 등
지배기업					
(주)동양	당기	81,980	984	-	61,600,000
	전기	46,271	-	-	-
관계기업					
동양증권(주)	당기	26,535	-	-	-
	전기	2,788,613	-	-	-
동양시멘트(주)	당기	140,294,706	137,042,427	886,522	48,857,189
	전기	20,169,574	1,289,268	-	962,202
기타 특수관계자					
동양네트웍스(주)	당기	47,620	2,788,598	-	6,242,209
	전기	-	898,915	-	342,023

상기 표의 특수관계자 채무 등 금액에는 당사가 발행한 어음채무(유동성이자부차입금)가 포함되어 있으며 당기말 현재 ... (주)동양 61,600,000천원, 동양네트웍스 6,000,000천원 ...입니다.

라. 동양네트웍스 및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등

1) 동양그룹은 2013. 1.경부터 2013. 8.경까지 실물자산 매각 중심의 1차 구조조정을 통하여 시장성 CP 등을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리스크를 해소하고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추진하였다.

2) 그런데 2013. 8.경까지 목표하였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자 동양그룹은 2013. 9.경부터 압축적인 새로운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3) 한편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2013. 8.경부터 동양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이 강등되었고, 금융감독원은 2013. 10.경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4) 동양네트웍스는 2013. 10. 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공시하였고, 그 무렵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되었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17. 동양레저에 대하여 2013회합187호로,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하여 2013회합188호로,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2013회합193호로 각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6) 동양네트웍스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함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촉구하고, 2013. 10. 18.부터 주권 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하였다.

7) 대주회계법인은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1) 계열사 등의 CP 매입을 통한 자금지원으로 유동성 악화

채무자는 2011년 9월부터 계열사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기업어음(CP)의 매입 및 상환을 통한 거래금액은 총 466,800백만원이며, 이중 417,400백만원은 정상 상환되었으며 49,400백만원 계열사(주)동양 7,000백만원, 동양레저 18,900백만원, 동양인터내셔널 20,000백만원, 동양시멘트(주) 3,500백만원)의 회생절차개시로 인하여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2) 계열사에 대한 매출채권 미회수에 따른 유동성 악화 ... (생략) ...

(3) 주식차입금을 통한 계열사 자산 매입 ... (생략) ...

종합의견

... 계속기업가치는 144,794백만원이고 청산가치는 121,919백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2,875백만원 초과하고 있으며 ...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 ...

마. 동양네트웍스 임원 등의 구속기소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

1) 금융감독원은 2013. 11.경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2) 금융감독원은 2013. 12. 26. 동양그룹의 CP 등 관련 검사, 조사 인력을 대폭 확대하여 강도 높은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분식회계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하고 있으며, 재무제표, 특히 특수관계자 자금거래 주식공시 누락 등에 대한 중점 감리를 실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3) 현재현(동양그룹 회장, 동양네트웍스 이사), 김철(동양네트웍스 이사) 등에 대하여 2014. 1.경 각종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81, 456(병합), 536(병합)호로 현재현, 김철 등에 대하여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하였다(이하 '동양그룹 형사사건'이라 한다).

5) 동양네트웍스는 2014. 1. 28. 현재현, 김철에 의한 10억 원의 횡령혐의, 754억 원의 배임혐의가 발생하였다는 내용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각 '기타 시장안내'를 공시하였다.

6) 동양네트웍스는 2014. 3. 1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되었고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상장폐지 여부의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된다는 내용의 '기타 시장안내'를 공시하였다.

바. 피고의 동양네트웍스 201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

1) 피고는 외부감사인으로 2014. 3. 31. 동양네트웍스에 제23기(2013. 1. 1. ~ 2013. 12. 31.) 재무제표(이하 '2013년 재무제표'라 한다)에 대한 감사보고서(이하 '2013년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다.

2) 동양네트웍스는 2014. 3. 3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하였다.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지 여부는 2014년 3월 14일자로 인가된 회생계획안 실행의 성패에 따라 좌우되는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회사는 당기 중 동양레저로부터 투자부동산을 취득 완료하였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의 총 취득원가는 96,028,519천원입니다.

(5)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단위: 천원)

1) 당기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이자수익
		대여	회수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株)동양(*)	28,900,000	21,900,000	206,022
종속기업	동양생명과학	7,280,000	4,425,000	398,250
	매드엠	1,110,000	2,214,000	108,148
	금진바이오테크	310,000	240,000	21,600
관계기업	동양레저(*)	109,500,000	96,600,000	731,862
기타특수관계자(*)	동양인터내셔널(株)	126,400,000	112,400,000	986,908
	동양시멘트(株)	35,000,000	31,500,000	214,630
	동양파미연설대부(株)	12,400,000	11,400,000	30,949
합계		320,900,000	280,679,000	2,698,369

(*) 당기 중 회사와의 특수관계가 해소되었으나 기중 거래내역은 공시하였습니다.

2) 전기

특수관계구분	회사명	자금대여 거래		주식처입금	이자수익
		대여	회수	처입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株)동양	2,000,000	2,000,000	-	6,822
종속기업	동양생명과학	6,920,000	3,963,000	-	413,659
	동양인터랙티브	1,264,000	760,000	-	29,904
	금진바이오테크	240,000	221,500	-	5,326
기타특수관계자	동양인터내셔널(株)	60,000,000	53,000,000	-	608,108
	동양파미연설대부(株)	8,000,000	8,000,000	-	13,151
	동양레저	57,000,000	51,000,000	-	761,433
	미관회	-	-	174,741,000	-
합계		135,424,000	118,944,500	174,741,000	1,838,403

3) 동양네트웍스는 2014. 4. 2.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상장유지가 결정되었으나, 감자절차가 진행되어 주권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공시하였다.

4) 동양네트웍스는 2014. 6. 13.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유형자산 처분결정'을 공시하였다.

사. (주)동양 등에 대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제기 등

1) (주)동양의 회사채를 취득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14. 6.경 (주)동양, 동양증권 주식회사(이하 '동양증권'이라고만 한다) 등을 상대로 (주)동양은 분식회계로 회사채 발행 적격을 가장하고 동양증권은 (주)동양의 회사채를 투자에 적합한 것처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이하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주)동양의 회사채,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 등을 매수한 사람들 중 일부는 2014. 7.경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CP를 사기적으로 판매한 뒤 전격적인 부도로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아. 증권선물위원회 제1차 조치 및 동양네트웍스 임원에 대한 형사판결 선고 등

1)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는 2014. 7. 23.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치를 의결하였고(이하 '증선위 제1차 조치'라 한다), 동양네트웍스는 같은 날 증선위 제1차 조치를 공시하였다.

지적사항

[별도재무제표]

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주식미기재

('12회계연도 216,718백만원, '13회계연도 1분기 129,000백만원, '13회계연도 반기 237,400백만원, '13회계연도 3분기 311,200백만원)

-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식기재를 누락하였고,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동 거래내역을 주식미기재

조치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2015. 1. 1. ~ 2016. 12. 31.)
- 검찰통보 (회사, 전 대표이사 1인)

2) 동양네트웍스는 2014. 7. 2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2014. 7. 24. 정지된다고 공시하였다.

3) 동양네트웍스는 2014. 7. 2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고 2014. 7. 25.부터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하였다.

4) 동양네트웍스는 2014. 7. 31. 주주가치 증진 및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계획 이행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재진단을 통한 자금 및 회계 프로세스 통제 강화, 주요 업무 규정 프로세스 점검 및 개선 후 운영'을 공시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17. 동양그룹 형사사건에서 현재현, 김철에 대한 동양네트웍스의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 매입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는 동양네트웍스가 2013. 8.경 및 2013. 9.경 각 매입한 합계 189억 원의 동양레저 CP 부분과 합계 200억 원의 동양인터내셔널 CP 부분이 포함되었다.

자. 증권선물위원회 제2차 조치 등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0.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2015. 5. 21. 동양레저에 대하여 각 회생절차종결결정을 하였다.

2) 증선위는 2015. 7. 15.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하였다(이하 '증선위 제2차 조치'라 한다).

지적사항

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12년도 별도·연결재무제표 113,718백만원)

- 감사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및 부동산 거래를 관련 주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조치

-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30%
- 당해 회사 감사 업무 제한 2년

차. 이준식의 동양네트웍스 주식 매수 및 대표당사자 선임 등

1) 이준식은 2013.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동양네트웍스 발행 보통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다.

2) 한국거래소(KRX)가 제공하는 시장정보에 의하면 동양네트웍스의 2012. 9.부터 2015. 10.까지 월별시세는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월	최고가(종가)	최저가(종가)	연/월	최고가(종가)	최저가(종가)
2012/09	1,550	1,255	2014/04	532	532
2012/10	1,350	1,100	2014/05	532	532
2012/11	1,145	1,000	2014/06	2,000	532
2012/12	1,130	858	2014/07	1,600	1,230
2013/01	1,665	953	2014/08	1,230	970
2013/02	1,635	1,245	2014/09	990	780
2013/03	1,295	1,055	2014/10	975	675
2013/04	1,505	995	2014/11	1,230	660
2013/05	1,460	1,300	2014/12	975	620
2013/06	1,360	1,100	2015/01	836	670
2013/07	1,290	1,150	2015/02	1,120	830
2013/08	1,220	1,020	2015/03	1,190	993
2013/09	1,110	880	2015/04	1,200	1,005
2013/10	1,085	617	2015/05	1,330	1,090
2013/11	702	525	2015/06	1,850	1,270
2013/12	626	515	2015/07	2,375	1,790
2014/01	776	499	2015/08	2,080	1,895
2014/02	532	532	2015/09	3,060	1,710
2014/03	532	532	2015/10	3,100	2,195

3) 이준식은 2016. 1. 1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수관계자 거래 등에 관한 이 사건 채무제표 주석의 기재누락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하고 특수관계자 거래 및 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이를 토대로 동양네트웍스 발행 주식을 취득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였고(당초 2016가단201770호로 제기되었다가 재배당으로 2016가합30418호가 되었다), 같은 날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한 이 사건 감사

보고서가 공시된 2013. 4. 1. 15:17부터 동양네트웍스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 시점인 2013. 10. 1. 10:12까지¹⁾ 사이에 동양네트웍스 발행 기명식 보통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2013. 10. 1. 10:12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를 총원으로 하여 소송허가를 신청하였다.

4) 이 법원은 2016. 4. 29. 이준식을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소갑 제1 내지 4, 9 내지 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을 제3, 7, 8,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대표당사자

1) 동양그룹에서 비교적 재무구조가 양호한 동양네트웍스는 2012년 극도로 부실해진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이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유동성을 지원하고 2012. 12. 24. 동양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약 793억 원에 취득하는 거래를 하여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였다.

2) 동양네트웍스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위반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로부터 CP를 매입하고 동양레저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한 사실, 특수관계자 거래의 기중 거래금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이 사건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이러한 기재누락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시하고 특기사항

1) 동양네트웍스의 '2013. 10. 1.자 주요사항보고서(회생절차개시신청)', 즉 동양네트웍스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여 관련 결정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기재를 하거나 중요한 사실의 기재를 누락하였다.

3) 한편 피고가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던 CP 매입을 통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자금지원이 내포하고 있던 위험성이 현실화 됨으로써 동양네트웍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주가는 폭락하였다. 대표당사자를 비롯한 선의의 투자자인 구성원은 피고의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구성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4)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집단소송 관련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다수성, 쟁점의 공통성, 적합성 및 효율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대표당사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집단소송이 허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동양네트웍스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내역, 거래금액, 채권·채무의 기말 잔액,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모두 기재하였고,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재누락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본안소송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고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설령 대표당사자 주장과 같이 일부 기재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투자자가

투자판단 등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줄 만한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이 성립할 수 없다. 결국 구성원은 저마다 각기 거래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을 위한 법률상·사실상 기초가 동일하지 않게 된다면, 집단소송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없고 효율성과 쟁점의 공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3) 동양네트웍스의 주가는 감자, 유상증자, 대주주 변경 등의 중요한 경영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등락을 거듭하였고, 결과적으로 구성원 중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 시기에 따라 손해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효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4) 구성원은 증선위 제1차 조치와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다수 이루어진 2014. 7.경 무렵 특수관계자 거래 누락과 관련한 제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 19. 제기된 집단소송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도 소송허가신청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3. 소송허가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률의 규정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8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하 '집단소송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외국회계감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준용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배상할 금액은 청구권자가 그 증권(그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 또는 받은 금액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처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한한다)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
 - 1.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그 증권의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처분가격을 말한다)
 - 2. 제1호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
- ③ 제2항에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자는 청구권자가 입은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손해배상책임)

- ②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인은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선임할 때 계약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집단소송법

제3조(적용 범위)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다.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조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 ①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제12조(소송허가 요건)

- ①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2. 제3조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
 3.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
 4. 제9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을 것

나. 기본 법리

1) 집단소송법은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에서 집단소송의 허가요건을 별도로 정하고(제11조, 제12조), 대표당사자가 소송허가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하며(제13조 제1항), 소송허가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제15조 제1항) 등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집단소송이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인 소송허가절차와 집단소송의 본안소송절차를 분리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가 소명할 대상은 소송허가요건이고, 본안소송절차에서 다루어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에서 심리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법원은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손해배상청구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중요한 쟁점이 모든 구성원에게 공통될 것'이라는 소송허가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심리를 할 수 있다. 한편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소송허가요건의 하나로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효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수 구성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소송경제상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경제적인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6. 11. 4.자 2015마4027 결정 참조).

2) 중요사항이란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참조). 한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표시 또는 그 기재·표시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그 기재·표시나 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2다16063 판결 참조).

3)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투자자 또는 제3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등 참조).

4)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에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라 함은 문언 그대로 청구권자가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소정의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감사보고의 기재누락이나 허위 기재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96다41991 판결 참조).

다. 소송허가 요건 중 효율성 및 쟁점의 공통성 부분의 충족 여부

집단소송법 제15조 제1항은 법원은 제3조(적용 범위), 제11조(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제12조(소송허가의 요건)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결정으로 집단소송을 허가한다고 규정한다. 그중 소송허가의 요건으로서 집단소송법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요구하는 효율성은 집단소송이 다른 구제수단보다 경제적이고 우월할 것을 요구하는 '경제성'과 '우월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같은 항 제2호가 요구하는 쟁점의 공통성(이하 '공통성'이라 한다)은 구성원 전체에 공통되는 사실상·법률상 문제로서 공통쟁점이 구성원의 개별쟁점을 압도할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이 집단소송에서 주장하는 청구원인 가운데 중요사실이 공통되고, 집단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다

른 일반소송절차를 통한 구제수단보다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항목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송허가 요건 중 효율성 및 공통성 부분이 충족되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쟁점 관련 공통성

가) 대표당사자는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본안소송청구로서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한다. 앞서 본 기본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허가절차가 아닌 본안소송절차의 심리 대상이다. 다만,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로서는 적어도 본안소송청구가 집단소송법에서 정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적용 범위 해당성, 그리고 같은 측면에서 구성원 모두가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본안소송청구를 제기한다는 공통성을 신청의 이유로서 소명하여야 하고(집단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조), 법원으로서도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의 준별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안소송청구가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한지 여부, 이에 따라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공통성이 소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행위 등 본안소송청구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만약 소송허가절차에서 법원이 오로지 대표당사자의 주장 자체에만 한정하여 적용 범위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거나 본안소송청구에 관하여 전혀 심리할 수 없다면, 소송허가절차가 형해화되고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공통성도 결여된 사건에 대하여도 소송허가가 인정되어 구성원이나 피고 모두에게 불필요한 본안소송절차가 후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본안소송청구가 집단소송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소송요건으로서 공통성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소명이 저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항목에서 살펴보는 '중요사항'에 관한 사실 내지 사정은 다음 항목인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 측면에서 효율성 내지 공통성의 소명을 저해하는 근거로도 작용한다).

(1) 기재가 필요한 사항을 확장하면 기재누락이 손쉽게 인정되고 누구든 기재누락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과도한 공시를 요구하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증권발행·유통이 위축되고 자본시장의 효율성은 낮아진다. 따라서 정보의 부족뿐만 아니라 범람 또한 피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이라는 개념으로 의무적 공시의 범위가 제한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88447 판결 참조). 회계감사인 손해배상 책임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한정된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47조 제3항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투자자에게 설명되어야 하는 '중요사항'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규정과 앞서 본 기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주식거래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중요사항은 결국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대표당사자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서 중요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특수관계자 거래는 상대방과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성립되지 않았을 거래라도 성립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나, 특수관계가 아닌 자와의 거래라면 인정되었을 조건과 다른 조건이 인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회사의 영업을 평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재무제표 주식에는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네트웍스의 특수관계자로 표시되고, 각 특수관계자를 포괄하여 매출·매입 내역, 채권·채무 내역, 대여금 내역이 기말 기준 잔액으로 표시되어 있다.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에 관한 기재누락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재무제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동양네트웍스의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및 매출의존성, 전기와 비교한 당기에서의 특수관계자 거래 증가, 특수관계자 거래 중 대여에서 발생한 손실(대손충당금 설정), 특기할 만한 거래내역 등이 나타나 있다.

(3) 2013년 재무제표 주식과 비교하였을 때 기재누락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대표당사자의 주장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의 각 회사별 구분, 거래내역의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별 구분, 기중 거래금액 표시의 측면에서 이 사건 재무제표 주식에는 기재누락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결 2011. 11. 18., 이하 '구 기업회계기준서'라 한다)²⁾와 구 외부감사법 제5조에서 정한 회계감사기준 중 550 특수관계자(2007. 12. 21. 개정, 이하 '구 회계감사기준'이라 한다)³⁾에 의하더라도, 감사대상인 회사에 회사별 구분, 거래내역 구분, 기중 거래금액 표시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감사인에게 위와 같은 관점에서 감사대상 회사를 감사할 것을 요구하

2) 피고가 제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소을 제10호증)는 2014. 3. 28. 의결된 것으로 이 사건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의 것이다.

3) 회계감사기준이 전면개정되어 2011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의결을 거쳐 2012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이 전면개정된 '550 특수관계자'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 이후 개시하는 보고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다.

고 있지는 않다.

구 기업회계기준서(제1024호)

- 18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기업은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 요구사항은 문단 17의 요구사항에 추가된다. 공시는 최소한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 (1) 거래 금액
 - (2)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다음 사항
 - (가) 그 채권·채무의 조건(담보 제공 여부 포함)과 결제할 때 제공될 대가의 성격
 - (나) 그 채권·채무에 대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
 - (3) 채권 잔액에 대하여 설정된 대손충당금
 - (4)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하여 당해 기간 중 인식된 대손상각비
- 19 문단 18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류하여 공시한다.
- (1) 지배기업
 - (2) 당해 기업을 공동지배하거나 당해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3) 종속기업
 - (4) 관계기업 ...(생략)...
 - (7) 그 밖의 특수관계자
- 20 문단 19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금액의 범주별 분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공시사항이다. 이러한 범주는 특수관계자와의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특수관계자거래에 적용하기 위하여 추가된 것이다.

구 회계감사기준(550 특수관계자)

2. (감사증거)
- 2.2 감사인은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감사절차를 수정 또는 확대하거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왜곡표시의 발생위험이 통상적 기대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 (2)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징후가 존재하는 경우
3. (특수관계자의 파악 및 관련 거래의 공시)
- 3.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가 요구되

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공시가 적절한지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특수관계자 거래 중 CP 매입·상환을 별도로 공시하고 CP 거래에 관한 기중 거래금액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더더욱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3. 3.경을 기준으로 CP 매입·상환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서 특별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회계기준이나 감사기준이 널리 수용되었던 것도 아니다. 더욱이 CP는 대부분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단기간 내에 매입과 상환이 여러 차례 반복될 수 있고(2012년 동양네트웍스의 CP 매입·상환은 총 54회), 상환이 완료되었다면 당해 CP에 따른 손실 가능성 등 리스크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2012년 동양네트웍스의 매입 CP는 모두 상환됨), 기말 기준 잔액을 기재한 것을 두고 현저한 불합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중 거래금액이 모두 공시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상환된 CP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중 거래에 관한 개별적·구체적 내용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증선위 제1차 조치 및 증선위 제2차 조치에서 이 사건 재무제표 상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주식미기재를 216,718백만원 및 113,718백만원으로 인정하여 양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전자는 연간 기중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후자는 연중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즉, 증선위도 2014년에는 기중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감사대상 회사를 제재 하였다가, 2015년에는 최고 잔액을 기준으로 감사인을 제재하는 등 적절한 공시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재무제표의 공시와 2013년 재무제표의 공시 사이인 2013. 11.경 금융감독원은 '특수관계자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공표하였다(소을 제1호증). 여기서 금융감독

원은 구 기업회계기준이 거래의 상대방 및 종류별로 어느 정도까지 상세히 구분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기업간 공시 충실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에 종속기업, 관계기업 등 범주별 총액뿐만 아니라 해당 특수관계자의 명칭과 거래내역이 별도로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재하고, 일반상거래(재화 매매, 용역 제공 등), 자금거래(대여, 차입, 출자 등), 지급보증(담보제공 포함) 등으로 분류하여 기재하되, 세부 유형별로 중요한 거래는 다른 거래금액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금융감독원의 공표에 의하더라도 2013. 11.경 이전까지 이 사건 재무제표와 같이 범주별 총액 기재와 거래유형 구분이 없는 공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러한 공시 사례가 위법하다고 선언되지도 않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내용도 '모범사례', 즉 이른바 'Best Practice'에 가까운 권고적인 사항으로서 안내되었던 것이다.

(6) 보통 '회사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된다(위 96다 41991 판결 참조). 그런데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특수관계자 거래를 상세히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의 순이익, 순자산, 자기자본,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1주당 손익을 왜곡하지 않고, 기말 기준 잔액이 표시된 이상 기준시점에서의 재무상태 관련 수치를 왜곡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주식거래를 고려하는 투자자는 'PER'(Price Earning Ratio, 주가수익비율,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를 참작하여 투자 여부와 그 규모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동양네트웍스의 PER 자체가 호도된 것도 아니다.

(7) 한편 누락 정보의 공시가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였다면 중요성의 기준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누락 정보를 이미 인식하고 있거나 다른 공시로부터

인식 내지 추론할 수 있다면 중요성은 인정될 수 없다. 누락 정보를 이미 시장이 알고 있다면 이에 관한 부실공시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동양네트웍스의 동양그룹 계열사 자금지원, CP 거래 관련 기말 잔액, 이 사건 골프장 거래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전 내지 그 무렵 시장에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가) 먼저 이 사건 재무제표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동양네트웍스가 동양그룹 계열사와 각종 자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특수관계자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내용으로서,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동양온라인 주식회사의 주식취득,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 결정 등을 특기사항으로 기재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재무제표 주석에는 동양네트웍스가 주식회사 오리온의 주식 159,000주를 차입, 매각하여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였다는 취지도 나타나 있다. 앞서 보듯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 말경 내지 2013년 초경부터 동양그룹 계열사 지원에 관한 이른바 '구원투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역할을 한다는 점은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되기도 하였다.

(나) '거래'인 만큼, 설령 일방이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타방이 공시를 함으로써 시장에 거래 정보가 알려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동양네트웍스의 특수관계자이자 거래 상대방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의 각자 공시에 의하여 시장에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사이의 CP 거래가 이미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동양네트웍스와 마찬가지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모두 구 외부감사법상 감사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각각 2012년 재무제표 주석에 동양네트웍스를 특수관계자로 표시하고 CP 관련 거래의 기말 잔액이 60억 원임을 기재해 두었다(소을 제22, 23호증).

(다) 피고는 이 사건 재무제표에 이 사건 골프장 거래라는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골프장 거래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전인 2012. 12. 말경 이미 동양네트웍스가 공시한 사항이고,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된 사실을 알 수 있다(소을 제6호증의1, 3). 또한 특수관계자이자 거래 상대방인 동양레저 역시 2012. 12. 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거래를 공시하고, 자신의 2012년 재무제표 주석에도 이를 기재해 두었다. 한편 이 사건 골프장 거래는 이 사건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인 2013. 4. 30.에 완료되었고, 동양네트웍스는 2013. 5. 2. 거래 완료를 공시하였던 사정도 알 수 있다.

(8) 앞서 본 기초 법리에 의하면 중요사항에 관한 기재누락 여부는 기재누락이 이루어진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후적으로 발생·인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과거의 기준시점으로 돌아가 판단한다면 일종의 '사후 과잉확신편견'(Hindsight bias)에 빠질 수 있다. 중요사항은 회고적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가 부실공시를 신뢰하고 주식거래를 선택하였다는 당시의 시점과 시장 상황 등을 기초로 검토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다양한 상대방과 다양한 형식, 방법, 내용으로 실행될 수 있다. 2012년에 있었던 특수관계자 거래 자체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나 특수관계자 중에서도 특히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과의 거래, 거래 중에서도 특히 CP 매입·상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은, 2013. 10. 경 동양네트웍스의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의 상환이 어렵게 되었다는 결과에 기초한 것으로, 되돌아켜보니 '중요했었다', '위험했었다'는 사후적인 판단에 가깝다. 더욱이 이러한 회고적인 관점의 판단 내용마저도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2012년 발행되고 거래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가 동양네트웍스의 재무상태 악화의 요인이 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동양네트웍스가 2012년 매입한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는 모두 상환되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 중 미상환된 부분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2013. 3.경 이후인 2013. 8.경 내지 2013. 9.경 발행되어 동양네트웍스가 매입한 CP이다.

(9) 결국, 설령 특수관계자 거래에 관한 구체성이 다소 떨어진다고거나 '최선의 공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무제표 주석이 구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거나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 사건 재무제표에 대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적정의견을 제시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두고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 쟁점 관련 효율성 및 공통성

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의 규정 내용 및 앞서 본 기본 법리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는 동양네트웍스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이 사건 재무제표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 공표된 것으로 신뢰하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생각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일응 추정되고, 구성원으로서는 이와 같은 추정에 따라 본안소송절차에서 '거래 인과관계 내지 신뢰 요건'(이하 '거래 인과관계'라 한다)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나아가 손해액은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은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므로, 공통쟁점이 개별쟁점을 압도하고 집단적인 소송절차가 경제적이고 우월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유지하는 기초도 된다. 그런데 만약 소송허가절차에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이 복멸되고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된 경우에도 소송허가를 한다면, 본안소송절차에서 구성원으로서 거래 인과관계에 관한 각자의 고유한 사실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이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공통쟁점의 압도와 집단소송의 경제성·우월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결국 효율성과 공통성은 저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허가절차에서 대표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을 인정받고 이에 따라 거래 인과관계라는 쟁점의 범위에서는 사실상 효율성과 공통성의 추정까지 인정받을 수 있되, 그 상대방인 피고는 직접적으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투거나(예컨대, 주가가 기재누락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았다, 구성원이 시장가격의 진실성을 신뢰하지 않았다거나 기재누락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하였을 것이라는 등), 또는 간접적으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사실관계가 부존재하고 허물어졌거나 양립 가능한 다른 사실관계가 존재하여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이 복멸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고 다투므로써 대표당사자에 의한 효율성의 소명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은 복멸되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효율성과 공통성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소명이 저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거래 인과관계의 추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른바 '시장사기이론'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가격은 공개된 모든 중요정보를 반영하고 따라서 부실공시도 반영하게 된다. 일반 투자자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기보다는 증권의 가격이 공개된 모든 중요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는 '가격의 진실성'에 따라 증권을 거래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시장가격에 증권을 거래하였다면 부실표시를 포함한 모든 중요정보를 신뢰하였다는 사실이 추정된다는 것이다. 설령 완전한 시장사기이론을 수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자본시장의 전문가들은 공개된 중요정보를 고려하

로 이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증권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를 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그 경제학적 타당성이나 현실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비대면 거래가 대부분인 자본시장에서 일반 투자자가 거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간단한 전제(공개정보, 중요성, 효율적 시장, 거래 시점)만으로 이러한 추정이 인정됨으로써, 소송허가절차에서도 구성원(50인 이상), 공통성, 효율성의 요건이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피고로서는 소송허가절차와 본안소송절차 모두에서 추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2) 투자자는 이러한 추정으로 증명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복명이 가능한 추정으로서 실제로 복명이 되었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직접 부실공시를 신뢰하고 증권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설령 시장사기이론이나 자본시장 효율성의 가정에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당사자가 직접 신뢰요건을 증명하지 않고 시장사기이론에 따라 추정의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피고로서는 시장사기이론에서 요구하는 전제를 공격함으로써 추정을 복명하거나, 또는 반대로 시장사기이론의 전제와 양립 가능한 다른 사실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추정이 유지될 수 없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기재누락이 공개된 중요정보이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이 효율적인 자본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표당사자는 기재누락이 동양네트웍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의 이익을, 그리고 기재누락이 발생한 시점과 밝혀진 시점 사이에 시장가격으로 거래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대표당사자는 기재누락을 신뢰하고 동양네트웍스의 주식을 거래했다는 추정의 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

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추정의 전제로서 기재누락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개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표당사자로서는 기재누락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의 이익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대표당사자로서는 소송허가절차에서 직접 거래 인과관계를 소명하여야 할 것인데, 재무제표 자체나 회사의 재무상태와 직결되는 분식회계 등이 문제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일반 투자자가 재무제표 주식 중 특수관계자 거래 부분에 관한 기재누락을 신뢰하고 투자하였다'는 명제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달리 이러한 거래 인과관계가 소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4)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추정의 전제와 양립 가능한 사실관계로서, 설령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표당사자가 원용하는 시장사기이론에 따른다면 효율적인 자본시장의 경우 다른 공시나 다수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중요사항이 이미 자본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동양네트웍스가 동양그룹 계열사를 자금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전에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던 점, 동양네트웍스와 동양레저 모두 2012년 말경 이 사건 골프장 거래를 공시하였던 점, 거래 상대방인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이 동양네트웍스와 CP 거래에 관하여 2012년 재무제표 주식으로 공시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시장사기이론에 의하면 증권의 가격은 공개된 모든 중요정보를 반영하므로, 위에서 본 중요정보는 이미 동양네트웍스의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기재누락이 동양네트웍스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추정은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다.

(5) 나아가 당시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독특한 시장 상황

도 존재하였다. 2012.경부터 2013. 8경까지 동양그룹 계열사는 동양그룹이 계획,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성패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변동되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투자자 중에는 동양네트웍스와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간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그 주체가 동양그룹 차원의 자금지원으로, 그 목적도 동양그룹 전반의 회생으로 인식하였던 사정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과 언론에서는 적어도 2013. 초경까지는 동양네트웍스의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지 않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평가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재누락이 없었더라면, 즉 2013. 3.경 공시된 이 사건 재무제표 주석에 동양레저 및 동양인터내셔널 CP 거래에 관한 기중 거래금액 약 1,260억 원이 모두 기재되고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CP 거래까지 특기사항으로 기재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반드시 동양네트웍스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거나,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단념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다.

3) 제척기간 쟁점 관련 효율성 및 공통성

가)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본안소송청구인 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⁴⁾(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그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위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피고의 주장, 입장 등을 고려할 때, 피고는 본안소송절차에서 제척기간 도과에 관하여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제척기간 도과가 명백하다면, 설령 집단소송의 적

4) 이 사건 감사보고서는 2013. 3.경 제출되었고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은 2016. 1.경 제기되었으므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는 문제되지 않는다.

용 범위에 해당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청구는 본안에 관한 실체 판단 이전에 이미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결국에는 본안소송절차가 무용한 것이 되는 만큼, 소송허가의 실익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이 점에 있어서는 대표당사자 측도 이 사건 심문에서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법원은 소송허가절차에서 제척기간 도과가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한도 내에서 본안소송청구와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를 심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물론 소송허가절차에서 개별적인 구성원별로 구체적인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본안소송절차와의 준별을 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만, 앞서 본 기본 법리에 의하면 일반인이 기재누락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당해 청구권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대표당사자나 구성원 개인이 아니라 구성원 전반 또는 구성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제척기간 도과가 인정될 수 있다고 다툼으로써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효율성과 공통성의 소명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척기간 도과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기는 하나, 본안소송절차에서 본안 판단에 이르기 이전 단계부터 구성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하고, 구성원별로 구구한 주장, 증명, 판단이 후속될 수밖에 없다면 공통쟁점의 압도와 집단소송의 경제성·우월성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균적 일반인 내지 일반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2015. 1.경(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19.로부터 1년의 기간을 역산한) 이전에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기재누락 등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 점이 소명되므로, 구성원 중 상당수에 대하여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상

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본안소송절차에서 대표당사자 및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주장,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여서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효율성과 공통성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소명이 저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대표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 대한 제재로서 증선위 제2차 조치는 2015. 7.경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증선위는 2014. 7. 23. 이미 이 사건 재무제표에 관하여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미기재'를 지적하면서 'CP 매입 거래내역 누락, 이 사건 골프장 관련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누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검찰통보의 제재를 하는 증선위 제1차 조치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증선위 제1차 조치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동양네트웍스는 DART에 공시하였다.

(2) 동양네트웍스는 2014. 7. 23.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주권 매매거래가 2014. 7. 24. 정지된다고 공시하였고, 그 무렵 각종 언론은 '분식회계', '중징계', '회계처리 위반', '회계기준 위반', '재무제표 허위', '동양사태' 등의 제목으로 동양네트웍스가 이 사건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 거래, CP 매입 등에 관한 기재누락을 하였다는 데 대한 증선위 제1차 조치 내용과 함께 동양그룹 계열사 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다소 비판적인 어조로 다수의 보도를 하였다. 한편 그중에는 금융감독원이 2014. 10.경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부실감사 책임을 물어 동양네트웍스의 외부감사인인 피고를 비롯한 다수의 회계법인을 징계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소을 제2의 18, 21호증), 그 이전부터 '동양사태'에 관하여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3) 더욱이 이른바 '동양사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되

었고, 금융감독원은 2013. 10.경부터 이미 동양그룹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동양그룹 회장인 현재현과 동양네트웍스 이사인 김철이 2014. 1.경 구속기소되고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후속되었으며, 2014. 10.경 동양그룹 형사사건에서 각종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4) 한편 그 과정에서 동양네트웍스에 대하여 2013. 10.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동양네트웍스는 2015. 1.경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기도 하고, 주권 매매 거래 정지와 해제가 반복되기도 하였다.

라. 소결

따라서 소송허가 요건으로서 효율성과 공통성 부분의 충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대표당사자의 이 사건 소송허가신청은 이유 없어 이 법원 2016가합30418호 집단소송을 불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1. 20.

재 판 장 판 사 김양섭

판 사 하상제

판 사 장태영